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0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다올투자증권㈜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다올투자증권㈜ : 과태료 1,200백만원 부과

- 조치사유 : 가.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
나.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위반

3. 조치사유

가.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

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다올투자증권㈜ A부서 등 소속 임직원 13인은 2022.7.1.~2023.6.30. 기간중 랩·신탁 증권사의 위법한 거래*를 감추어 주기 위해

* '제3자 이익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·신탁재산 간 연계거래' 등으로 하나증권㈜ 등 9개 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(2025.3.31.)되어 위법거래에 해당

○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(KOFR금리 이하)로 채권 교체거래를 지속적·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총 28,835건(141조 8,426억원)의 위법한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

나.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,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,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다올투자증권㈜ B부서는 2022.6.28. 인수한 채권 ㉮ 400억원을 C증권사 등에 파킹하고, C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리상승 및 건설사 채무불이행 우려 등에 따라 평가손실을 입게 되자

- 정당한 사유없이 C증권사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, 2022.11.15, 2022.11.18, 2022.11.28. D증권사 등 다른 증권사를 통해 C증권사가 보유한 ㉮를 고가에 매수하는 동시에, 동일 증권 혹은 유사한 증권을 C증권사에 저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C증권사의 손실 0.44억원을 보전하는 등 연계거래를 3회(293억원)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,

○ E부서는 F증권사에서 채권 ㉮ 등 5개(247억원)를 G증권사에 파킹하는 것으로 알고, 2023.6.16., 2023.7.6. 동 CP를 F증권사에서 고가에 매수하여 2023.6.20., 2023.7.6. G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하였으나, 이후 F증권사가 동 CP를 고가로 재매수할 것을 거부하여 G증권사가 손실을 입게 되자,

- 정당한 사유없이 G증권사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3.8.25.~2023.8.31. 기간 중 C증권사를 통해 G증권사의 CP를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다올

투자증권이 손실 2.26억원을 부담하는 연계거래를 1회(247억원) 수행한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, 제449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, 제390조, <별표 22>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<별표 3>